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5-9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25. 7. 15.	33-2020-10-0000008	주식회사 파라타항공	항공국	호출명칭 변경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20-10-0000008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국제공항 국내신청사	파라타항공김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20-10-0000008	129.125 MHz	6K00A3EJN	6 kHz	9 W	1장치